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05호)

- 2001. 7. 9.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7. 7.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7. 7.
- 다. 상정일자 : 2001. 7. 9.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13회 제1차정례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가.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241호, 2000. 1. 28)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행위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함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는 농립수산업용 시설의 경우와 주택·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기존 면적을 포함 330제곱미터 이내로 대지조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강화(안 제3조제2항)

- (2) 국방·군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목적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의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규모의 행위허가 부지면적은 30,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안 제3조제3항제1호)
- (3)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허가 취소근거 마련(안 제4조)
- (4)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조)
- (5) 개발제한구역내 과태료 부과 적용기준을 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회 이종환)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서초구 전체면적은 47.14km²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57km²로 52.1%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5조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 등 개발행위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항이 자치 사무로서 조례로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상 명백히 자치사무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 후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01. 6. 16 ~ 7. 6(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특히 동 조례안중 제3조 내지 제6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포함, 제정이 불가하며 시정 요구해 달라는 의견제출 건이 있었음.

□ 검토의견

서초구 면적의 52.1%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규모 개발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구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조항이 있고 조례안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의 관계는?

답)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입안권을 가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의 의견은 서울시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자치구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임. 또한 의견청취는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 의견만 청취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 음.